

「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박춘희 의원
- 제안일자 : 2023. 11. 22.
- 회부일자 : 2023. 11. 27.

2. 제안이유

-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여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수상대상, 수상부문, 수상시기 및 상장 규정(안 제2조 ~ 제6조)
- 추천 공고 및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(안 제7조 ~ 제8조)
-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관련(안 제9조 ~ 제11조)
-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및 수상자 결정(안 제12조 ~ 제13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,
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 제17조제3호에서 모범청소년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·시상하고 귀감이 되도록 하여 관내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수상대상)는 청소년상 대상으로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함. 이는 상위법인 「청소년 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범위와 일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3조(수상부문과 인원)에서 시상분야를 4개 부문(모범선행, 창의인재, 학력향상, 문화체육)으로 하고, 각 부문별 1명씩 수상하되 심사

결과에 따라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하여
청소년상의 가치가 격하되는 것을 방지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각 분야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포상하며 우리 군
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
입법의 취지가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상에 필요한
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